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병원 운영 성과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전문병원 지정분야 및 지정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문병원 지정기준(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병상)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 나. 전문병원 지정분야에 ‘재활의학과’를 삭제함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안 별지 제3호서식)
- 다.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6. 의료 질(質)’ 평가 대상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한 개정(안 별표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제3조의5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제3조 제1항의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 이후에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지정을 유지한다.

[별표 1]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진료과목에 대한 환자의 구성비율을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실환자(특정기간동안 실제 입원한 환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구분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	환자의 구성비율	
질환	관절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45%
	뇌혈관	MDC 'B' 신경계 질환 및 장애(B05, B60 제외)	30%
	대장항문	MDC 'G' 소화기계 질환 및 장애	45%
	수지접합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MDC 'X' 외상, 중독 및 약물의 독성 효과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또는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심장	MDC 'F' 순환기계 질환 및 장애	30%
	알코올	MDC 'V' 알코올/약물 사용 및 알코올/약물로 인한 정신 장애	66%
	유방	MDC 'J' 피부, 피하조직, 유방 질환 및 장애	30%
	척추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MDC 'B' 신경계 질환 및 장애 중 B05, B60	66%
	화상	MDC 'Y' 화상	45%
	주산기(周産期)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 1세 이하인 환자(정상신생아 제외)	25%(각각)
진료과목	산부인과	MDC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신생아 'P' 포함)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또는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소아청소년과	18세 이하인 환자	66%

신경과	MDC 'B' 신경계 질환 및 장애 MDC 'C' 눈의 질환 및 장애 중 C61 MDC 'D' 귀, 코, 입, 인후 질환 및 장애 중 D61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중 I68 MDC 'U' 정신 질환 및 장애 중 U60, U65	66%
안과	MDC 'C' 눈의 질환 및 장애	45%
외과	MDC 'F' 순환기계 질환 및 장애 중 F06, F10, F15, F16, F64, F66 MDC 'G' 소화기계 질환 및 장애 MDC 'H' 간담도계 및 췌장 질환 및 장애 MDC 'J' 피부, 피하조직, 유방 질환 및 장애(J67, J68, J69, J70 제외) MDC 'K' 내분비, 영양, 대사성 질환 및 장애 중 K02, K03, K04, K05, K06, K65, K66, K67 MDC 'Y' 화상	45%
이비인후과	MDC 'D' 귀, 코, 입, 인후 질환 및 장애	45%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비율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가. 해당 병원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수지접합 질환이나 외과의 경우 단순진료질병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의 상위 30퍼센타일(백분위수)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연환자를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병원의 진료실적은 제외한다.

-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가 연간 10명 이하인 병원
-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다. 가목에 따른 진료량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

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3. 필수 진료과목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질환/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질 환	관절질환	정형외과, 내과
	뇌혈관질환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대장항문질환	외과, 내과
	수지접합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내과
	심장질환	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알코올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유방질환	외과, 내과
	척추질환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내과
	화상질환	외과, 내과
	주산기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 료 과 목	산부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과
	안과	안과
	외과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4. 의료인력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질환/진료과목		전문의 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질 환	관절질환	8명 이상	정형외과
	뇌혈관질환	6명 이상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대장항문질환	8명 이상	외과
	수지접합	8명 이상	정형외과, 성형외과
	심장질환	8명 이상	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진 료 과 목	알코올질환	4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유방질환	4명 이상	외과
	척추질환	8명 이상	정형외과, 신경외과
	화상질환	4명 이상	외과 *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만 대체 인정
	주산기질환	8명 이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8명 이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6명 이상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4명 이상	신경과
	안과	8명 이상	안과
	외과	4명 이상	외과
이비인후과	8명 이상	이비인후과	

나. 가목에 따른 의료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병상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병상 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환/진료과목	최소 병상 수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수지접합,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척추질환	80
대장항문질환, 화상질환, 주산기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60
신경과, 유방질환, 안과, 이비인후과	30

6. 의료 질(質)

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율 및 치료 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의료질 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7.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가.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환자 수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비율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가. 해당 병원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특정기간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 또는 외래 진료 건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체 병원급의 의료기관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의 상위 30퍼센타일(백분위수)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를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병원의 진료실적은 제외한다.

-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가 연간 10명 이하인 병원
-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다. 가목에 따른 진료량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3. 필수 진료과목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질환/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중풍질환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척추질환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부인과
-------	-------

4. 의료인력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한방부인과의 경우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중 한방부인과에 3명 이상의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질환/진료과목	전문 의 수	전문 의 인정 진료과목
중풍질환	4명 이상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척추질환	4명 이상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4명 이상	한방부인과, 한방내과, 침구과, 사상체질과, 한방소아과

나. 가목에 따른 의료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시설 및 기구

「의료법」 제77조 및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 중 해당 전문과목별 시설 및 기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기구 기준은 지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의료 질(質)

가. 의료 질 평가는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치료 결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기준 및 대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의료질 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7.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력 현황

가. 의 사

(단위: 명)

구 분	총계	전문의	일반의
계			
내 과			
신 경 과			
정 신 건 강 의 학 과			
외 과			
정 형 외 과			
신 경 외 과			
흉 부 외 과			
성 형 외 과			
마 취 통 증 의 학 과			
산 부 인 과			
소 아 청 소 년 과			
안 과			
이 비 인 후 과			
피 부 과			
비 뇨 의 학 과			
영 상 의 학 과			
방 사 선 종 양 학 과			
병 리 과			
진 단 검 사 의 학 과			
재 활 의 학 과			
결 핵 과			
가 정 의 학 과			
핵 의 학 과			
직 업 환 경 의 학 과			
응 급 의 학 과			

나. 한의사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단위: 명)

구 분	총계	전문의	일반의
계			
한 방 내 과			
한 방 부 인 과			
한 방 소 아 과			
한 방 신 경 정 신 과			
침 구 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			
한 방 재 활 의 학 과			
사 상 체 질 과			

다. 진료 지원 인력

(단위: 명)

구 분	인 원 수	비 고
총 계		
간 호 직	계	
	간 호 사	
간 호 등 급		등 급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전문병원의 지정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 전문병원의 지정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가. (생략)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가. (현행과 같음)		
구분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	환자의 구성비율	구분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	환자의 구성비율
질환	(생략)		질환	(현행과 같음)	
진료과목	산부인과 MDC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정상신생아는 제외한다)	(생략)	진료과목	산부인과 MDC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신생아 'P' 포함)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재활의학과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로서,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환자	66%	재활의학과	<삭제>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가. 해당 병원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수지집합질환이나 <u>외과 및 재활의학과</u> 의 경우 단순진료질병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의 상위 30퍼센타일(백분위수)이상이어야 한다.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가. 해당 병원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수지집합질환이나 <u>외과의 경우</u> 단순진료질병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 환자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의 상위 30퍼센타일(백분위수)이상이어야 한다.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3. 필수 진료과목 (생략)			3. 필수 진료과목 (현행과 같음)		
질환/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질환/진료과목	필수 진료과목	
질환	(생략)		질환	(현행과 같음)	
진료과목	(생략)		진료과목	(현행과 같음)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삭제>	
4. 의료인력 가. (생략)			4. 의료인력 가. (현행과 같음)		
질환/진료과목	전문의 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질환/진료과목	전문의 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질환	(생략)		질환	(현행과 같음)	
	화상질환	4명 이상		외과	4명 이상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과목			진료과목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활의학과	4명 이상	재활의학과	<삭제>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5. 병상 (생략)			5. 병상 (현행과 같음)		
질환/진료과목		최소 병상수	질환/진료과목		최소 병상수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지집합,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척추질환		80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삭제>, 수지집합,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척추질환		80
화상질환, 주산기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재활의학과		60	대장항문질환, 화상질환, 주산기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삭제>		60
신경과, 방사선종양, 안과, 이비인후과		30	신경과, 방사선종양, 안과, 이비인후과		30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별표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제1항제2호 관련)

1. ~ 5. (생략)

6. 의료 질(質)

의료 질 평가는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치료 결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기준 및 대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7.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인력 현황

가. ~ 나. (생략)

다. 진료 지원 인력

(단위:명)

구분	인원수	비고
총계		
간호직	계	
	간호사	
의료기사	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등급		등급

* 의료기사는 재활의학과에 한정한다.

[별표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제2조 제1항제2호 관련)

1. ~ 5. (현행과 같음)

6. 의료 질(質)

가. 의료 질 평가는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치료 결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기준 및 대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의료질 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7.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인력 현황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진료 지원 인력

(단위:명)

구분	인원수	비고
총계		
간호직	계	
	간호사	
<삭제>		
간호등급		등급

<삭제>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제3조 제1항의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 이후에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지정을 유지한다.